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위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홍보대사를 위촉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함 (안 제3조)
- 홍보대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안 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4,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해촉할 수 있다.”를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등)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3.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3명

② 위원회 임기는 위촉시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 1. ~ 3.(생략) ② ~ ③(생략) <u><신설></u>	<u>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한다.</u> 1. ~ 3.(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 <u>제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u>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u>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3. <u>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u>
<u>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u>	<u>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u>

도 해촉할 수 있다.

1. ~ 4.(생략)

<신설>

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 4.(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3조

에 따른 위원회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3.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3명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u>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u>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u>
<u>제5조</u> (생략)	<u>제7조</u> (현행과 같음)
<u>제6조</u> (생략)	<u>제8조</u> (현행과 같음)
<u>제7조</u> (생략)	<u>제9조</u>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대변인실 장동진 주무관

대변인 우승봉